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Cases of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care Teachers

임진석¹ 정성춘² 권용준³ 김근진⁴ 도남희⁵ 이재희⁶ 최윤경⁷

Jin Seok Lim¹ Seong Choon Jeong² Yojun Kwon³ Keun Jin Kim⁴

Nam Hee Do⁵ Jaehye Lee⁶ Yoon Kyung Choi⁷

* 본 논문은 임진석(2019)이 집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체연구보고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확보 방안연구(1)’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과장

2 교신저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ido0304@kosha.or.kr)

3 공동저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장

4 공동저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5 공동저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6 공동저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7 공동저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of child care teacher and to suggest preventive measure in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safety for child-care teacher.

Methods: We investigated laws, policy,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child care teacher. Especially, we reviewed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care teacher to identify whet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cover child-care teacher. Also cross tabulation and a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 child care centers from 2013-2018.

Results: Safety and health related policies to protect child care centers have been carried out by child 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but it has mainly been functioned to protect children excluding child care teacher. The most occupational accidents occur in worker aged 40s. The most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 were falling down on the floor and surface. Also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fall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occupational accidents cases of child-care teacher. **Conclusion/Implications:** We suggest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including strengthe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 care workers,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projec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key words child-care teachers safety, occupational accidents, accidents prevention

I. 서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효과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 등의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보건복지부, 2017)과 동시에 영유아 무상보육(0세~5세까지)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돌봄센터 확충과 연장보육료 신설, 연장전담교사 지원정책으로 보육교사 수도 증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또한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에 공백이 증가됨에 따라 정부의 보육정책도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보육과 양육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서, 0세~5세(취학전) 영유아 아동을 부모(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보육하는 시설인 놀이방 운영(교육기관 제외), 보육시설 운영(비거주형), 아동보호시설(비거주형), 아동전용 보호시설(비거주형), 어린이 놀이방 운영(비거주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비거주형), 어린이집(비거주 보육 위주),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장 탁아시설 등 비거주형 아동보호시설(통계청, 2020)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보육통계상에서 확인되었으며, 보육교사가 근무(종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1998년 17,605개소에서 2018년 39,17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전체 어린이집 종사 보육교사는 약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9).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직원) 수는 20인 미만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19).

이렇게 정부정책(2013년부터)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변화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수도 증가되어, 사회적인 고용창출과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의 부정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아동학대 등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을 일부 보육교사의 인성문제 또는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업무환경 등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임진석a, 2019).

그리고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이재희, 김은영, 2019). 또한,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1시간이 보장되도록 명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어려운 실정이고,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육 공백에 따른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신분은 근로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별표3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포함)의 임면’에서 ‘임명권자(어린이집 원장)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포함)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규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 적용되는 대상자이지만, 현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진석b, 2019).

이렇게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상해와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처리 실태 등에 대한 문제(국가인권위원회, 2014)도 과거에 지적이 되었지만,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만이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면서, 보육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령만 15개로 8개의 소관부처에서 소관업무별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의 주체가 보육(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임진석b, 2019).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육환경 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있어왔지만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를 기초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 되어왔다.

특히 보육교사가 어떠한 산업재해에 주로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주로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대부분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환경실태와 영유아 안전실태, 보육시설(어린이집), 교통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과 건강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임진석b, 2019).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등을 비롯한 근로환경 문제는 보육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이은주, 양성은, 2012; 김은설 등, 2009), 우수인력의 진입을 저해하고 높은 이직률을 유발시키고 아동의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 교사-아동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Ackerman, 2006). 즉, 보육교사의 산업재해는 곧바로 아동에게 전가되고 이는 미래 인적자원 양성체계의 손실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영역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집은 종사자수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이다(임준, 이상윤, 임형준, 2006). 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우 취약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활용의 여유가 없어 충분한 휴게 시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시간이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산업재해가 미보고 되는 경우가 많다(박정선, 김양호, 김수근, 박종식, 한보영, 2016).

따라서 어린이집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이므로 관련 종사자와 시설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관리 취약 영역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검토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발생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에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1) 정책(행정)자료 및 관계(유관)법령

보육교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정책(행정)자료, 법제처 자료와 더불어 「영유아보육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제처에서의 법률용어상 보육교사의 개념,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정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산업재해 통계분석

보육교사 대상 산업재해 통계 분석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중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중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걸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재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분석은 재해 발생형태별, 기인물(재해가 원인이 되는 물체 등)별, 요양 일수별,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1) 기초분석

기초분석은 산업재해통계상에 산업재해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통계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고 재해발생형태, 기인물, 요양일 수, 연령별 등으로 구분되어 수집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고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재해 발생형태는 재해유형에 해당하는 분류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재해발생형태의 주요 분류를 살펴보면, 떨어짐, 기입, 부딪힘, 무너짐, 물체에 맞음 등 20개의 넘는 분류기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생형태별 빈도가 높은 10순위까지만 분석결과에 제시하였다.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체 등을 의미한다. 기인물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로 정리하였으며, 기인물 역시 빈도가 높은 10순이까지만 분석결과에 제시하였다.

2) 산업재해조사표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발생형태 중 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보육교사 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정하였다. 대표 사례 선정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2인, 보육전문가 2인이 산업재해 통계의 사고개요를 분석한 후 연구자간 일치도가 100% 일치하는 사례만 본 연구에 소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보육교사의 산업안전보건과 관계되는 기본 개념인 보육, 보육교사(보육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보육교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법적근거, 보육교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기본 개념 등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1. 보육교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우선 보육업무의 일부로서 안전직무(도남희, 조혜주, 최종화, 2014;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 2006)에 대한 연구, 안전관리 지식과 태도 및 실천(김인정, 2012; 엄세진, 2013; 김은숙, 2009; 권경숙, 박지영, 2010)에 대한 연구, 안전관리의 한계와 개선(김은숙, 2009; 권경숙, 박지영, 2010; 도남희 등, 2014;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 2015)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서문희 등(2006)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직무 및 근무환경을 파악하여 교사의 역할을 보육, 지원, 운영 업무를 세분화하여 8가지로 직무로 유형화하였고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보육인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매우 길고 휴식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사무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의 근로환경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서문희 등(2006)은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아동의 안전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다. 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아동의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졌다.

김인정(2012)은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은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우선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안전사고와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수경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 2015). 또한 주로 인식하고 있는 안전교육 범위가 교통안전교육에 국한되어 담임교사들이 안전교육에 제한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실내·외 안전 환경교육 등으로 안전교육 범위가 다양해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인정, 2012).

엄세진(2013)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적인 안전지식, 철저한 사전 대책이나 관리 감독에 의해 예방되어질 수 있다고 보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지식의 함양을 위해서 안전교육의 시수확보를 통한 양적 강화도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전교육은 안전한 환경구성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본 지침의 숙지는 물론, 실기위주의 응급처치교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엄세진, 2013).

김은숙(2009)의 연구에서 보육교사 업무에서 영유아 안전에 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안전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들과 환경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았다. 또한 보육시설의 안전사고의 원인을 영유아나 교사 개인에게서만 찾기보다는 보육시설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안전 교육의 당위성은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고 보고 보육교사가 안전에 대한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도남희 등, 2015).

도남희 등(2014)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건강·영양·안전 담당 교직원(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에 대한 근무 현황을 조사하여 근무 실태를 분석하여 그 중 안전 관련 직무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전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 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문제, 근골격계장애 관련 문제가 대두 되면서 보육교사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웃음 및 친절 등 특정한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하는 노동유형이다(김동현, 이재모, 2014). 서비스 직업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는 노동이므로 감정적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서비스 종사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김동현, 이재모, 2014).

특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감정표현은 교육 및 보육의 관점에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실제 느끼는 감정과 겉으로 나타내는 감정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정명선, 2014).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이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유발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보육교사의 안전관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보육 및 보육교사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석

보육은 영유아(0세~5세까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인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보육(Betreuung), 교육(Bildung), 양육(Erziehung)로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며, 보육(Betreuung)은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모두에 대하여 국,공립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보육과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 보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은 어린이그룹(Kinderkrippe), 그 외 가정에서의 교육은 일일가정보육으로 구분하면서 가정보육은 영유아의 가정으로 개인 전문보육교사가 일일 방문하거나 전문보육교사가 본인의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5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유수연, 2017).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공교육서비스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권채리,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위임하면서, 가정양육을 지원(보육비 등) 등의 일부분만 국가가 개입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보육이 아닌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보육이다.

그리고 표준 직업분류상 소 및 세분류상으로 “보육교사”는 공공 또는 민간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기타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보육교사는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양 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위탁된 영아의 건강상태, 발육경과를 계속 관찰하여 연령, 발육 정도에 적합한 보육 계획을 세우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지도하며, 유아의 정서 및 지능발달을 위하여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틀, 그네 등의 설비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통계청, 2020).

또한 전체 어린이집 종사자 중 대다수(약 73%, 24만 여명)를 차지하는 보육교사(2급)는 전문대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보육교사 3급)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임진석b, 2019).

“보육 및 교사보조 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아동 복지시설, 키즈 카페, 탁아기관 등 보육 관련 시설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를 보조한다. 그리고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학시 또는 야외 활동 시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영유아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관찰하고 제공되는 식사와 같은 개별 영유아의 활동 및 상태에 대한 기록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사 교육 보조원”은 교실 안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실습 또는 실험 수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교보재를 준비하거나 시청각 장비를 조작하고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수거하거나, 학생의 지적, 신체적, 행동적 활동과 장애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의 발달을 제고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연하거나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통계청, 2020).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개념은 그 역할과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자격에 따라 보육교사의 신분을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해석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표명하고 있다. 즉 어린이집에 종사

하는 자(원장/ 사업주 제외)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업무와 관계되는 노무를 제공하다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된 것이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사업주인 원장은 제외) 모두가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이란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곳(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될 수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되도록 사업주인 원장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주(원장)는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

4. 보육교사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근거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대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부분에서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진석b, 2019). 이렇게 보육교사의 신분을 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신분과 직접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부분에서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대상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보호대상인 근로자이다(임진석b, 2019).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행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2020년 1월 16일 시행)]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모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의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이다(임진석b, 201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중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의 ‘특별교육만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직접 적용되는 업종이며,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역시 안전이 담보되는 법적 보호대상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부분에서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보육교사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 되는 대상이면서, 어린이집 원장(사업주)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안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되는 근로자이다(임진석b, 2019).

5. 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통계 분석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기타 사업(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업체는 1,678,961개소이며, 가입 종사자는 10,058,930명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업체는 149,945개소이고, 가입 종사자는 1,550,008명이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40,896개소, 가입 근로자는 263,347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18년도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타 사업(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소)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2018	1,678,961	10,058,930	149,945	1,550,008	40,896	263,347

출처: 안전보건공단 내부자료 (산업재해통계)

표 2. 2018년도 보육교직원 생명·신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소)*		보육교직원 가입 현황**	
	업체	종사자	전체 어린이집	가입 어린이집
2018	40,896	263,347	39,171(100%)	30,424(77.6%)

* 출처: 안전보건공단 내부자료 (산업재해통계)

** 출처: 중앙육아지원센터 2018년 (보육통계)

또한 보육교직원 생명·신체보험 가입 현황의 경우 2018년 12월(보육통계 기준) 전체 어린이집 39,171개소이며, 보험 가입 어린이집은 30,424개소(77.6%)로 나타났고, 생명·신체보험 가입

보육교직원 수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직원 생명·신체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집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육통계상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직원 현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통계와 보육교직원 생명·신체보험 가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2018년 보육통계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이 총 39,171개소로 확인되었으나,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자료에서는 총 40,896개소로 나타났고, 보육통계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통계상 약 1,725개소가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히 어느 통계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둘째, 2018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중 원장(사업주)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이 총 294,444명으로 나타났고,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상에서는 총 263,347명(89.4%)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 31,097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약 31,097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은 보육교직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보육교사 산업재해 통계 현황과 사례에 대한 결과

2013년~2018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요양일수, 기인물별, 발생형태별,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면서, 연관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 통계자료 중에서 발생형태와 기인물로 분류하여, 발생빈도(건수)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넘어짐(819건), 절단·베임·찔림(165건), 부딪힘(158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51건), 이상온도접촉(145건), 떨어짐(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 기인물은 바닥 및 지표면 등, 계단 및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의 구성요소(부속물), 가구 및 사무기구, 생활용품 및 기구, 용기·꾸러미 및 가구, 수공구, 육상교통수단 등의 순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최근 6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 수는 3,158건이고 매년 사고부상과 질병이환 건수가 평균 5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건 중 88.7%(2,802건)이 사고이고 질병이환은 11.9%(356건)이다.

표 3. 2013년~2018년까지 연도별 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건수 (단위 : 건수, %)

연도	사고부상자 및 사망자	질병이환자 및 사망자	계
2013	523(86.6)	81(13.4)	604(19.1)
2014	452(85.9)	74(13.9)	526(16.6)
2015	467(90.2)	51(9.8)	521(16.4)
2016	408(89.3)	49(10.7)	457(14.4)
2017	444(87.9)	60(11.5)	504(16.0)
2018	508(92.5)	41(7.5)	549(17.4)
계	2,802(88.7)	356(11.1)	3,158(100.0)

요양일수 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9~90일이 41.5%(1,3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1일 이상 38.3%(1,209건), 15~28일이 13.3%(423건)로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재해가 최소 15일 이상의 요양일 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린이집 종사자 요양 일수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4일미만	4~ 14일	15~ 28일	29~ 90일	91일 이상	사망자	계
2013	-	47(7.8)	80(13.2)	264(43.7)	213(35.3)	-	604
2014	-	53(10.1)	89(16.9)	209(39.7)	174(33.1)	1(0.2)	526
2015	-	31(6.0)	54(10.4)	228(44.4)	205(39.6)	-	518
2016	1(0.2)	24(5.3)	59(12.9)	179(39.2)	194(42.5)	-	457
2017	-	26(5.2)	67(13.3)	219(43.5)	189(37.5)	3(0.6)	504
2018	-	28(5.1)	74(13.5)	212(38.6)	234(42.6)	1(0.2)	549
계	1(0.0)	209(6.6)	423(13.4)	1,311(41.5)	1,209(38.3)	5(0.2)	3,158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5-9인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34.7%(1,095건), 5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29.1%(918건)으로 9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린이집 종사자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 15인	16인 ~ 29인	30인 이상	계
2013	239(39.6)	198(32.8)	116(19.2)	43(7.7)	8(1.3)	604(100.0)
2014	162(30.8)	188(35.7)	109(20.7)	57(10.8)	10(1.9)	526(100.0)
2015	157(30.3)	172(33.2)	113(21.8)	70(13.5)	6(1.2)	518(100.0)
2016	119(26.0)	147(32.2)	106(23.2)	72(15.8)	13(2.8)	457(100.0)
2017	122(24.2)	187(37.1)	109(21.6)	71(14.1)	15(3.0)	504(100.0)
2018	119(21.7)	203(37.0)	125(22.8)	81(14.8)	21(3.8)	549(100.0)
계	918(29.1)	1,095(34.7)	678(21.5)	394(12.5)	73(2.3)	3,158(100.0)

2013년~2018년도 어린이집 재해의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넘어짐이 34.4%(1,0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 11.1%(351건) 작업관련 질병(뇌심 등) 11.0%(347), 부딪힘 10.9%(289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9.4%(296)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재해에서 기인물 현황을 살펴보면 바닥 및 지표면 등이 24.6%(77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람, 동·식물 11.5%(363건), 계단 및 사다리 9.8%(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형태별 및 기인물 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순위	발생형태별	건수	점유율	순위	기인물	건수	점유율
1	넘어짐	1,085	34.4	1	바닥 및 지표면 등	776	27.7
2	부딪힘	351	11.1	2	사람, 동·식물	363	13.0
3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347	11.0	3	계단 및 사다리	309	11.0
4	불균형 및 무리한동작	296	9.4	4	가구 및 사무기구	257	9.2
5	절단·베임·찔림	217	6.9	5	용기, 꾸러미 및 가구	226	8.1
6	이상온도 접촉	212	6.7	6	수공구	204	7.3
7	떨어짐	157	5.0	7	건축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부속물	170	6.1
8	체육행사 등의 사고	127	4.0	8	육상교통수단	169	6.0
9	끼임	112	3.5	9	생활용품 및 가구	110	3.9
10	물체에 맞음	107	3.4	10	기타 설비·기계	42	1.5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92.7%(29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인자 2.9%(9건), 뇌심혈관질환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린이집 종사자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사고성 재해 포함) (단위 : 건수, %)

연도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생물학적인자	작업관련성질환 기타	계
2013	73(90.1)	2(2.5)	5(6.2)	1(1.2)	81
2014	71(95.9)	1(1.4)	-	2(2.7)	74
2015	50(98.0)	-	1(2.0)	-	51
2016	47(95.9)	1(2.0)	-	1(2.0)	49
2017	51(85.0)	3(5.0)	3(5.0)	3(5.0)	60
2018	38(92.7)	1(2.4)	-	2(4.9)	41
계	330(92.7)	8(2.2)	9(2.5)	9(2.5)	356

연령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2%(1,1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5.3%(800건), 30대 미만이 12.3%(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약 60% 이상이 40-50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 별 재해 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13	80(13.2)	133(22.0)	211(34.9)	139(23.0)	41(6.8)	604(100.0)
2014	68(12.9)	133(25.3)	192(36.5)	102(19.4)	31(5.9)	526(100.0)
2015	65(12.5)	100(19.3)	197(38.0)	129(24.9)	27(5.2)	518(100.0)
2016	53(11.6)	89(19.5)	180(39.4)	112(24.5)	23(5.0)	457(100.0)
2017	59(11.7)	95(18.8)	158(31.3)	154(30.6)	38(7.5)	504(100.0)
2018	64(11.7)	89(16.2)	173(31.5)	164(29.9)	59(10.7)	549(100.0)
계	389(12.3)	639(20.2)	1,111(35.2)	800(25.3)	219(6.9)	3,158(100.0)

2)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

(1) 넘어짐

어린이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넘어짐 재해였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들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의 대소변 등의 뒤처리 등의 업무로 인해 화장실 미끄럼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계단 등이 영유아에 맞춰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유아들이 우는 경우 급박하게 달래주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넘어짐 재해 사례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41	36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마친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가던 중 평소처럼 영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열려 있는 안전문에 발이 닿은 순간 미끄러져 안경이 벗겨지는 등 심하게 넘어져 다침.
38	22	어린이집 부엌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다 넘어져서 다침.
38	148	어린이집에서 상기인이 3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1층 사무실로 내려오는 도중 발을 헛디더 계단에서 넘어짐.
40	68	사업장내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중 계단에서 이동시 발을 접질림.
46	246	상기 재해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12시30분경 어린이집 구내 화장실에서 아이들 소변 뒤처리를 도와주다 화장실바닥에 미끄러지며 주저앉아 우측 발목을 다쳐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임.
47	33	어린이집 내에서 아기 목욕을 시키던 중에 비누에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같이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바닥을 집다가 부상을 입음.
52	241	만1세 교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급하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교실 안에서 다리가 꼬이며 넘어지는 순간 아이들을 향해 안 넘어지려고 몸을 지탱하려다 무릎을 꿇어서 다침.

(2) 질병이환(근골격계)

질병이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주로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업어주고 안아주거나 배변을 위해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등에 디스크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차량 탑승을 위해서도 허리나 팔을 굽히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근골격계 재해 사례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50	28	어린이집 내 화장실에서 영아를 배변하기 위해 변기에 앉히고 소변을 본 후 영아를 안아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
58	393	평소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영아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을 자주 하다가 10월 초에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앉거나 허리를 기억자로 굽히면 통증이 없었으나 서거나 걷거나 할 때 통증이 심하였음. 며칠간 파스붙이고 자가치료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퇴사함. 이후 MRI 촬영한 바 디스크 파열이 확인됨.
40	28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우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일어나서 안고 있던 중 영아가 잘 달래지지 않아서 장시간 안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함. 영아를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껴서 다른 교사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됨.
38	27	소방서 견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 영아들을 차량에 들어 올리며 인솔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남.
29	126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원아를 안아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상병명 “요추 제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부분 손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신청하고, 동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질병이 유발되었다며 상병명 “양측 고관절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및 삼출액”을 신청함.
32	65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만2세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업무특성상 영아들을 안아주거나 환경 정리 등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방사선 촬영을 통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고 틈틈이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였음. MRI촬영 결과 어깨 충돌증후군 및 엄중 판정을 받음.

(3) 부딪힘

부딪힘 사고는 교구 등을 이동하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들의 갑작스러운 장난 등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영유아를 대신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딪힘 재해 사례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47	42	어린이집 자료실에서 교구를 운반하던 중 문 모서리에 부딪침.
41	49	교사는 오른손에 식판, 왼손은 아동이 계단에 넘어질까 팔을 뻗은 상태였으며, 1차 충격은 아동이 3층 계단으로 아동이 달려와 교사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버리면서 허리가 휘청거렸고, 다시 3층 계단을 조금 내려온 복도에서 2차 충격으로 밀어버려 허리가 충격을 받게 됨.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고,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료교사께서 119에 신고하여 박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32	9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등원시간 입구에서 만 2세 아이의 신발을 벗겨주는 중에 뒤에 있던 만 4세 아이가 아는 체하며 동작을 크게 하던 중, 주먹으로 좌측 눈을 맞게 된 재해.
40	36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생일행사 준비를 위해 생일상을 차리는 중 유희실에서 놀이하던 4세 아동이 딱딱한 핑크색 리틀타익스 소핑카트로 밀며 놀이하던 중 3~4m거리를 달려와 뒤돌아서 상을 차리는 교사의 허리를 뒤에서 가격함. 오른쪽 허리이하 골반 다리 끝까지 잠을 잘수도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해져 진료 받음
48	43	에어바운스(놀이기구)에서 3세 아이가 점프하며 뛰면서 머리가 교사 손목 뼈에 부딪혀 손목 통증과 팔과 손에 통증이 발생함

(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 사례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은 어린이집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중 교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진 촬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리한 동작이 발생해 재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안고 일어서는 행동을 반복할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1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 사례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22	79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의 간식을 챙겨주기 전 앉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물 뜨러 가다가 다리절임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좌측 발을 접질러 부상입음.
26	56	어린이집에서 새학기 맞이 교실정리를 하던 중 동료교사와 함께 계단에서 교구장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더 부상을 당함.
47	136	청소년회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발표회 행사를 하였고 업무의 일부로 유아들의 발표회 활동모습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느라 수십 차례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낌. 부종을 동반한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되어 행사를 끝내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게되었고 좌측무릎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권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음.

(5) 절단·베임·찔림

절단·베임·찔림은 수업준비를 위해 교구를 제작하거나 어린이집 환경 정비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체험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농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13. 절단·베임·찔림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22	129	옥상 앞 3층 계단에서 평가를 위한 원내 환경 정비를 위해 벽면 먼지와 등위의 먼지를 제거하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긴 밀대걸레를 들고 천정에 있는 등위 먼지를 제거하려고 뒹던 중 밀대걸레가 등에 부딪혀 깨져서 떨어지는 것을 아래에 있는 교사들이 다칠까봐 왼손으로 받는 과정에서 깨진 등에 의해 왼손을 다침.
25	23	수업자료 준비 중 모루를 가위로 자르다가 왼손 검지의 구부러지는 두번째 마디 윗부분을 V자 형태로 잘림.
47	42	어린이집에서 유리창에 붙어있는 섀팅지 잔해를 벗기는 작업 시 밀칼에 오른손 엄지를 다쳤음
41	20	원아들을 위한 교구 제작 시 카트 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베임.
37	61	어린이집 아이들과 고구마 캐기 체험을 위해 미리 고구마 줄기를 낮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베임. 바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하고 수술을 하였음.

(6)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 발병

보육교사의 사고가 또한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야외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이다. 야외 활동시 진드기 등 감염체에 노출되어 쓰쓰가무시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야외활동 시 활동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이동 중에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야외활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표 14.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연령	요양 일수	사고개요
55	13	어린이들 야외 견학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동년 목이 아프고 오한이 생겼고, 다음날부터 얼굴과 목 주변에 발진이 있었으며, 저녁이 되면 오한과 발한이 있었지만 단순히 감기인줄 알고 자택에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음. 약 처방을 받은 후 복용하였는데도 호전이 없어 의원에 내원하니 왼쪽 옆구리와 등에 병변이 생겼음이 확인되었음. 이후 의원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을 내원할 권유(소견서 작성)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니 ‘쓰쓰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음.
28	16	잔디밭을 아이들과 매일 가는데 그곳에서 등에 진드기에 물려 쓰쓰가무시에 걸렸음
57	사망	원생과 교사가 사과따기 등 체험행사를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복귀하여 원생들 퇴원시킨후 목이 고단해 교사휴게실에서 쉰 다음 신협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 후 어린이집에 복귀하여 원감 책상에서 잠시 쉬다가 보육교사에게 어지럽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며, 119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회복이 되지 않았음.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실 외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46	29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00랜드에 견학(야외활동)을 가서 실내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아이들 놀이 장소와 바닥사이 일정한 높이가 있음) 목을 심하게 접질러 부상을 당함.
36	8	야외활동 수업 중 놀이 시설을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던 유아를 받다가 사고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문제를 산업재해통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최근 6년간 총 2,8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약 500건의 산업재해사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연령별로 산업재해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의 경우 넘어짐 및 부딪힘의 사고가 많고,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인물의 경우 넘어짐 사고 점유율이 높은 것이 반영되어 바닥 및 지표면 등이 가장 많았으며, 사람, 동·식물(주로 아동과 부딪히는 사고), 계단 및 사다리가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약 60%비율을 차지하였다. 발생형태별 보육교직원 재해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넘어짐의 경우에는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해서 아동을 안고 움직이는 자세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딪히는 경우는 주로 아동이 부주의하게 움직이는 도중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불균형 및 무리한 자세는 교재교구 운반, 사진촬영 등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베임·찢림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외활동 지도의 경우는 진드기 등으로 인해 쯤쯤가무시 등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보육통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중 원장(사업주)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이 총 294,444명으로 나타났고,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상에서는 총 263,347명(89.4%)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 31,097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약 31,097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보육교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그 역할을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들의 인격형성 및 사회성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보육교사 안전교육 규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일상건강관리규정에 보육교사 보건에 대한 의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임진석b, 2019). 또한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보육기관”, “사립 보육기관” 모두 관할 시청과 소방재청, 환경청에서 종사자 안전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국공립 보육기관”보다 “사립 보육기관”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NGO 성격의 공중보건 및 안전협회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25개소를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1년에 1회 조사관을 파견하여 보육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진석b, 2019). 이러한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안전 및 보건과 직접 관련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하여 건강보험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각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혹은 아동학대 교육 시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목과 어린이집 원장 대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가입절차, 적용대상 등에 대한 교육,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보고 및 보상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이용 가능대상이다. 특히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서비스하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예방실 등 보육교사의 직업성 질환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이 필요한 보육교사를 발굴하여 연계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높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감정노동 예방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업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영역확장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예방관련 자료 배포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및 설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은 영유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성인인 보육교사의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의 비상계단 설치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용할 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린이집의 사무용품 등의 구비 규정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성인용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치, 성인을 위한 사무 공간 설치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따른 어린이집의 양적팽창과 관련 종사자의 증가 그리고 대부분이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약 15개의 관계 법령과 약 8개의 소관부처 등에서 소관업무별로 규제하고 있다. 즉 모든 규제의 주체는 보육(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이러한 규제만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안전과 보건의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고민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육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부터 법적 근거,

보육교사의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재해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산업재해에 관련된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9. 07).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2&leftMenuId=0010001100101&vwCdVal=MT_PTITLE&cupListVal=118_2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4).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경숙, 박지영 (2010).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영아 안전교육.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4), 5-31.
- 권채리 (2016). **프랑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지역법제 이슈페이퍼 16-16-④. 세종: 법제연구원.
- 김동현, 이재모 (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419-435.
- 김은숙 (2009).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정 (2012). 보육시설 안전교육·안전사고 실태와 담임교사들의 안전교육 범위와 방법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4), 125-136.
-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 (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15-32-0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조혜주, 최종화 (2014). **보육교직원(건강·영양·안전담당) 직무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정선, 김양호, 김수근, 박종식, 한보영 (2016). **영세소규모제조업체와 종사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책**. 울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8. 04). **2018년 보육통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l.jsp?BBSGB=40&flag=SI&BID=70398>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 - 2022)**.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4200&CONT_SEQ=293280&FILE_SEQ=221424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 연구소 (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

- 부 보육정책관실 보육사업기획과.
-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 (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 환경 실태 분석**. 세종: 여성가족부.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800034086>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엄세진 (2013). 보육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태도, 안전실천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111-128.
- 유수연 (2012). 독일의 영유아 보육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6**, 4-10.
- 이은주, 양성은 (2012).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이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121-136.
- 이재희, 김은영 (2019). 영유아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4**(3), 97-119. doi:10.20437/KOAECE24-3-05
- 임준, 이상윤, 임형준 (2006). **소규모사업장의 산재 감소를 위한 지역안전보건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울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임진석 (2019a). 보육 종사자의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보건이슈리포트**, **13**(2), 26-33.
- 임진석 (2019b).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확보 방안 연구(1) - 보육 시설 운영업 중심으로**. 울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명선 (2014).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47-166.
- 통계청 (2019. 7).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보기(해설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통계청 (2020. 7). **한국표준직업분류내용보기(해설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통계청 (2019. 7).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54_15407에서 2020년 7월 1일 인출
- Ackerman, D. J. (2006). The costs of being a child care teacher: Revisiting the problem of low wages. *Educational Policy*, **20**(1), 85-112. doi:10.1177/0895904805285283

논문투고: 20.06.12
수정원고접수: 20.07.15
최종게재결정: 20.08.04